

의안번호	2201446
의 퇴 인	백승아 의원
회 답 일	2024.07.25.
추 계 번호	24C176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‘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’을 수립하고, 이를 위한 ‘실태조사’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(2025~2029년) 총 1억 4,200만원(연평균 2,84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 등 (안 제20조의4)	지원계획	32	—	—	—	—	32	6.4
	실태조사	22	22	22	22	22	110	22
합 계		54	22	22	22	22	142	28.4

주: 교육부의 기존 기본계획 수립(시행 제외)과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었던 연구용역비 및 수립주기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수립·실시 방법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0조의4 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(제1항)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정기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(제2항) 교원의 교육활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. 1.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2.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3.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4. 제24조에 따른 수업과 그 준비 5.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관리 6.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7.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 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한 연구활동 9. 그 밖에 법령에서 교원의 업무로 정한 사항 (제3항)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를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실태조사 및 공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		(제4항)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	재량규정
		(제5항) 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개한다. (제6항)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시기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0조의4 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	○	(지원계획 수립, 실태조사)
		×	(지원계획 시행) 개정안에 따라 수립된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계획을 시행할 경우, 계획에 따라 수립된 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, 현시점에서 지원계획의 구체적 내용과 사업을 예상하기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①교육부장관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비용과
②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

- 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 수립)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‘학생 학업성취도 평가, 교육과정 운영, 수업과 준비, 학교생활기록 관리, 학급운영 및 학생 상담, 학부모와의 상담, 연구활동 등’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정기적으로 수립·시행 하도록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- 개정안은 지원계획의 수립시기·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구체적 실시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우나,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 수립사례를 참조하여 연구용역을 통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가정¹⁾
 - (실태조사)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개정안의 실태조사를 교육부와 각 교육청 등의 기존 인력이 자료협조를 통하여만 실시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불가능하므로, 본 추계서에서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함
-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,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지원계획)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지원계획의 수립 비용은 관련 연구용역비로 추계하며, 교육부의 기존 ‘기본계획’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함
- 최근 5년간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, 연구용역비로 3,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, 수립 주기는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 사례를 감안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최근 5년간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천원)

용역명	실시연도	수행기관	소요비용
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	2022	육아정책연구소	36,364
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비전 및 주요과제 설정 연구	2021	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	30,000
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	2020	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	30,000

자료: 교육부 제출자료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지원계획의 수립을 부처 내의 기존 인력이 기존의 자료를 기반으로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

[표 3] 지원계획 관련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지원계획 수립	32	-	-	-	-	32	6.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실태조사)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실태조사는 관련 연구용역을 통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하며, 교육부의 기존 ‘실태조사’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

- 최근 3년간 교육부의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, 연구용역비로 2,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, 안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함

[표 4] 최근 5년간 교육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

(단위: 천원)

용역명	실시연도	수행기관	소요비용
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기초 연구	2021	육아정책연구소	18,182
특수외국어교육 진흥 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	2020	육아정책연구소	27,273

자료: 교육부 제출자료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(PRISM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[표 5] 실태조사 관련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실태조사 실시	22	22	22	22	22	110	2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관련 재정소요를 합하여 도출한 추가재정소요는 5년간(2025~2029년) 총 1억 4,200만원(연평균 2,840만원)으로 추계

[표 6] 안 제20조의4(교원의 교육활동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관련 추가재정소요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지원계획	32	-	-	-	-	32	6.4
실태조사	22	22	22	22	22	110	22
합 계	54	22	22	22	22	142	28.4

주: 교육부의 기존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었던 연구용역비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
개정안 시행 후 실제 수립·실시 방법에 따라 결과값은 변동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“실태조사”와 “지원계획”의 수립 방법 및 주기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
변경될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